#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한 상 욱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24-29

발의연월일: 2024. 2. 21.

발 의 자: 한상욱, 강선영, 최세진,

신찬호, 전철규, 정재봉,

최동철

#### 1. 제안이유

'골목형상점가' 지정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, 면적 산정시 일부 부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 중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함(안 제3조)

나.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 면적 산정시 도로, 공원, 주차장 부지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게 함(안 제4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,

##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

나. 협조부서 : 지역경제과

다. 입법예고 : 2024. 2. 23. ~ 3. 4.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, 공원,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         | 제3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    |
| 등)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         | 드)                   |
| 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<u>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</u> | <u>&lt;후단 삭제&gt;</u> |
| 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나 건축물은 동의에 필요한 수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와 면적에서 제외한다.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1.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
| 2.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        | <u>&lt;삭 제&gt;</u>   |
| 의 2분의 1이상의 동의. 이 경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<u>한다.</u>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3.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         | <u>&lt;삭 제&gt;</u>   |
| <u>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</u>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4.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
| 제4조(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)        | 제4조(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)   |
|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2. (생략)

2. (현행과 같음)

### 붙임

## 관계법령 발췌서

□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#### 제2조(정의)

2의2. "골목형상점가"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#### □「소상공인 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 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- 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-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